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 및 요구*

임효미¹⁾ 이승연²⁾

요약

본 연구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 원장 152명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30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과반에 가까운 수가 인정하고 있었으나, 대다수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장들은 맞춤형 운영시간과 보육료가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맞춤형 보육의 시행으로 인해 원장 및 교사의 근무여건과 보육료 수입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으며, 이는 재정적 부담과 행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둘째, 맞춤형 보육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에서는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향후 보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점으로는 국가, 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책임지는 보육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새로운 보육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와 조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상의 결과들은 향후 맞춤형 보육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맞춤형 보육, 맞춤형, 종일반, 어린이집, 원장

I. 서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핵가족이 보편화 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며,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 방법에도 변화가 초래되어왔다. 즉, 자녀의 양육

* 본 논문은 201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엔씨소프트어린이집 원장

2)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모습에서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기관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일제로 운영되는 기관의 수요가 늘어 유치원 종일반과 어린이집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어린이집의 수는 1995년 9,085개소였던 것이 2016년에는 41,084개소로 20년만에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수도 2001년 734,192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1,451,215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그 중 영아의 수는 2001년 168,575명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했던 것이 2016년에는 845,984명(만0세 141,013명, 만1세 318,245명, 만2세 386,726명)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3세 이하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지원이 출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OECD의 보고(Castles, 2003; Sleebos, 2003)를 감안하면, 영아의 어린이집 보육은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보육정책의 사회적 책무성과 공공성 전환 요구로 이어지면서 각종 재정 지원 정책에 반영되었다.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은 1999년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2008년 차상위계층, 2009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201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었고, 2012년에는 전 계층 만 5세(누리과정)와 0-2세 영아로, 2013년부터는 모든 0-5세(보육료, 누리과정 지원)로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도입된 양육수당은 2009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하 저소득층 영아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지원연령을 차상위계층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여 연령에 따라 월 10-2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취학전 영유아 전 계층으로 그 지원이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3a).

그러나 김현숙·이수진(2012)의 문제 제기과 강경미·이승연(2016)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보육료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지원 금액이 적은 양육수당으로 인해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영아에게 12시간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기본으로 함으로써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중요한 영아의 가정양육 약화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한영규, 2016).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에게는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고,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 정책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3b)을 통해 그간의 보육정책 진단 및 한계 분석 결과, 실수요층에 대한 맞춤형 설계와 제도 기반이 부족했다고 평가되어 다양한 양육 여건,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2014년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12월 국회에서 2016년 예산을 확정하였고, 20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이란,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종일반 영아(0-2세)와 부모를 제외하고, 적정시간의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아와 부모에게 일일 6시간과 필요에 따라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이하 바우처)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보건복지부, 2016a). 이는 기존의 보육정책에서 부모의 취업요건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취업부모의 자녀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역차별의 사례가 발생(이미화·유해미·최효미·조아라, 2014)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도적으로 다양화(오후 2시 30분/7시 30분 귀가로 이원화+영아는 3시간 단시간형 보육 가능)해야 한다는 보육정책 개편방안(서문희·안재진·이세원·유희정, 2009)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맞춤형 보육 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6d)에 의하면, 맞춤형 보육의 종류는 종일반, 맞춤반, 시간제 보육반, 시간연장형 보육으로 구분된다. 시간제 보육과 시간연장형 보육은 대상 및 시설에 있어서 일반적인 보육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 즉 종일반과 맞춤반에 대한 맞춤형 보육에 초점을 두고자 함을 밝힌다.

맞춤형 보육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특성을 운영시간 및 반편성, 맞춤반 대상, 운영 방식, 맞춤반 보육료 및 바우처, 제도적 보완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보육 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6d)에 따르면, 맞춤반 운영시간은 주중 6시간(기본 9:00-15:00)으로 하되, 지역별, 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 하에 기본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조정이 가능하다. 반편성은 맞춤반 아동만으로 단일반 구성이 가능한 경우 종일 단독반과 맞춤 단독반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영 상황 및 이용아동 현황을 고려하여 합반 편성·운영도 가능하다.

둘째, 맞춤반의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아로, 종일반 자격대상이 되지 않는 부모의 영아자녀이다. 종일반의 자격사유는 부모의 취업, 구직 및 취업준비, 돌봄 필요 가구(장애, 다자녀·육아부담, 임신 및 산후관리, 한부모·조손가구, 입원·간병, 학업, 장기부재), 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인데, 이러한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맞춤반으로 확정된다(보건복지부, 2016a).

셋째,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종일반과 맞춤형 프로그램 내용 및 질 등에 차이가 없도록 운영하며, 맞춤형은 급식 1회, 간식 2회(오전, 오후)를 제공하도록 한다. 맞춤형에는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맞춤형 보육 시행을 이유로 기존의 보육교사를 해고하거나 시간제로 전환하여서는 안 된다(보건복지부, 2016d).

넷째, 보육료 등의 측면에서는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보육료(부모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는 종일반 기준으로 2015년도 대비 6%가 인상되었으며, 맞춤형의 경우 보육료(부모 보육료)는 종일반 대비 80%, 기본보육료는 종일반과 동일하다. 맞춤형은 바우처 지원되며, 그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60천원(15시간/월)으로, 긴급한 보육수요 발생 시 맞춤형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며(보건복지부, 2016a), 미사용분은 다음 해 2월까지 이월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6b). 이용방법은 영아와 부모가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이 이용가능하고, 이용시간 전 어린이집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며, 익월에 아이행복카드로 일괄 결제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바우처 사용내역과 사용사유를 보육통합시스템에 7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6b).

다섯째, 제도적 보완의 측면에서 보면,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바우처를 12월이 아니라 학년말인 2월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 12월부터 바우처 사용내역 입력을 이용 후 3일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하였으며(보건복지부, 2016b), 2017년 3월부터는 바우처 사용시간 입력 단위를 30분에서 1시간으로 변경(사회보장정보원, 2017. 2. 27.)하는 등의 후속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맞춤형 보육의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100일을 맞아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보육의 현장 정착 상황’을 논의하였는데,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부모의 희망 이용시간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이 시행 이전보다 더욱 보장되고, 맞춤형 보육이 예상했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종일반 사유에 있어서는 맞벌이 가구가 45%정도이며, 맞벌이 외 다자녀, 임신, 산후관리 등이 32%로 홀벌이인 경우라도 돌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16c).

통계상으로 보아도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0-2세반 이용아 수는 7월 74.9만명에서 11월 83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종일반과 맞춤형 이용아의 비율은 약 77% 대 23%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맞춤형 아동은 바우처 이용시간을 포함하여 8월 기준 일 평균 6시간 30분을 이용하였으며, 바우처는 맞춤형 아동 중 84.1%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영규, 2016). 바우처 이용 아동의 평균 이용시간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이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므로 이용가능시간 대비 평균이용시간의 비율은 9월 기준 60.1%로 시행 이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부모와 영아의 실제 이용에 큰 변화나 무리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b).

그러나 현장에서는 충분한 준비 없이 맞춤형 보육이 이루어져 문제점도 제기 되고 있다. 맞춤형과 종일반에 속한 영아들의 등·하원시간이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맞춤형 영아의 병원 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바우처 역시 어린이집 운영 편의에 따라 제멋대로 이용되는 등 도입 취지가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데일리, 2016. 10. 5.). 이원화된 보육시간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모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보고하여 보육대담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김진석 외, 2016). 일각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지원금이 더 많은 종일반 대상자를 선호할 것이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들은 편법 구직서류를 제출해 종일반을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었다(뉴스1, 2016. 7. 16.).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종일반과 맞춤반의 보육료의 차이(종일반의 80%)로 인해 맞춤형 보육은 그 초점이 보육이 아닌 보육료 지원에 맞춰져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부모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종일반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고(김진석 외, 2016),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문 닫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고 영아가 전체 이용아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맞춤형 보육의 도입으로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운영상의 어려움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뉴시스, 2016. 10. 9.).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종일반 보육료와 맞춤형 기본보육료 모두 인상되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가능하다는 평가도 내려진 바 있다(한영규, 2016).

이상에서 제시한 현황과 문제 제기를 고려하면, 2016년 7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 이후 보육 현장에서 과연 맞춤형 보육이 본연의 취지와 목적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맞춤형 보육은 시행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아직 이루어진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현진·윤상용(2015)의 맞춤형 보육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가 있었으나, 이 연구는 24시간 보육에 대한 연구로 2016년 시행된 맞춤형,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보육과는 거리가 있다. 보육정책의 측면에서도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이보미, 2010; 주정옥, 2015) 및 부모의 인식(유영옥, 2008),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이금주, 2013), 보육정책 개편방향(서문희 외 2009; 이미화 외, 2014)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모두 맞춤형 보육 시행 이전의 상황이다.

보육정책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혼란을 겪으며, 부모와 아동에게 실제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들을 이끌고 지원하는 주체인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정책에 따른 실제 운영 현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요구를 알아본 연구는 임명수(2014), 박사빈(2016)의 연구 외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임명수(2014)의 연구는 0-2세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가정어린이집 원장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한 질적연구이므로 맞춤형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원장들의 인식 및 요구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박사빈(2016)은 경북지역의 민간어린이집 원장 11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 시행 직후인 2016년 8월에 현장에서 체감되는 만족여부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7문항)를 실시하여, 원장들이 보육형태, 시간, 바우처, 보육료 등에 있어서 불만족이 90%가 넘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자 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상이 경북지역 민간어린이집으로 한정되어 있어 타 지역과 어린이집 유형을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처음 1달간의 혼란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에 직면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많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안정된 이후에, 만족여부를 넘어 보다 다양한 인식과 요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맞춤형 보육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들이 맞춤형 보육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 보육에 대한 실제 활용도를 규명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화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영아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보육에 대한 원장의 인식은 어떠한가?
2. 맞춤형 보육에 대한 원장의 요구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1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원장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원장의 일반적 배경

N=152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직위 형태	대표자 겸 원장	74(48.7)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6(23.7)	
	임면 원장	75(49.3)		사회복지법인	1(0.7)	
	무응답	3(2.0)		법인·단체 등	2(1.3)	
원장 경력	10년 미만	98(64.5)	제공 서비스	민간	36(23.7)	
	10년 이상	46(30.3)		직장	41(27.0)	
	무응답	8(5.3)		가정	36(23.7)	
연령	30대 이하	35(23.0)	일반	일반	92(60.5)	
	40대	73(48.0)		영아전담	13(8.6)	
	50대 이상	43(28.3)		장애아통합	2(1.3)	
	무응답	1(0.7)		시간연장형	39(25.7)	
교육 정도	대학교 졸업(4년제) 이하	60(39.5)	휴일보육	24시간	2(1.3)	
	대학원(석사) 졸업 이상	92(60.5)		일시보육	1(0.7)	
최종 학교	아동(복지)학, 보육학	28(18.4)		무응답	무응답	2(1.3)
	유아교육학	92(60.5)				
전공	기타(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32(21.1)				

연구대상 어린이집의 전체 정원 및 현원, 영아반 정원 및 현원, 맞춤반 현원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바와 같이, 약 3/4 정도의 어린이집은 전체 아동 80명 이하, 영아반 40명 이하, 맞춤반 5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었고, 정원과 현원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영아반 현원 중 맞춤반은 대략 10%, 종일반은 90%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2016c)에서 발표한 영아의 종일반 비율인 77%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가 상대적으로 종일반 영아의 비중이 높은 지역(서울, 경기)을 대상으로 하고, 종일반 영아의 비중이 높은 유형(국공립, 직장)을 절반 정도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 연구대상 어린이집의 현황

단위: 명(%), N=152

인원구분	전체		영아반		인원구분	맞춤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 - 20명	37(24.3)	42(27.6)	62(40.8)	67(44.1)	1 - 5명	119(78.3)
21 - 40명	27(17.8)	31(20.4)	57(37.5)	47(30.9)	6 - 10명	7(4.6)
41 - 60명	31(20.4)	29(19.1)	11(7.2)	12(7.9)	11 - 15명	1(0.7)
61 - 80명	22(14.5)	19(12.5)	5(3.3)	5(3.3)	무응답	25(16.4)
81 - 100명	11(7.2)	12(7.9)	-	-		
101명 이상	22(14.5)	15(9.9)	-	-		
무응답	2(1.3)	4(2.6)	17(11.2)	21(13.8)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원장의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맞춤형 보육 시행 전·후에 발행된 2016년 맞춤형 보육 안내(보건복지부, 2016a)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맞춤형 보육에 관련한 토론(김경수 외, 2016; 김진석 외, 2016), 신문기사(뉴시스, 2016. 10. 9.; 이데일리, 2016. 10. 5.) 등의 관련 문헌을 토대로 제작하였다.

〈표 3〉 설문지의 구성

구분	문항내용	문항수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인식	·맞춤형 보육의 취지	8(하위 12)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이유)	
	·맞춤형 보육의 만족여부(이유)	
	·맞춤반 운영시간의 적절성(이유, 적절시간)	
	·맞춤반 보육료의 적절성(이유)	
	·맞춤형 보육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 (변화 여부, 변화된 정도, 바람직한 정도)	
	·맞춤형 보육에 유익한 대상과 불리한 대상	
맞춤형 보육에 대한 요구	·맞춤형 보육으로 인한 어려움	4(하위 2)
	·맞춤형 보육의 개선점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맞춤반, 종일반)	
	·향후 보육정책의 지향점	
	·새로운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고려할 점	
	계	12(하위 14)

설문지 제작 전에 국공립, 민간, 직장 어린이집 원장 3인에게 자문을 받았으며, 제작 후에는 원장 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응답하기 용이하도록 수정하였다. 이후 유아교육전문가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크게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로 구분되며, 12문항(하위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내용 및 문항구성은 <표 3>과 같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2016년 7월 1일부터)된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이며, 표집방법으로는 어린이집 유형 중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이 유사한 비중(약 25%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비율 층화표집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연합회와 원장모임 등에 연구 협조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설문지가 회수되는 대로 유형을 파악하여 부족한 유형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추가 배부하였다. 총 230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152부가 회수되어 66%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에는 불성실한 응답이 없어 152부를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에 있어서는 연구대상자의 배경,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별로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중복응답 문항은 케이스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순위 응답 문항은 순위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고,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설문지는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이므로 무응답이 있을 수 있고,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각 문항별 응답자 수를 100%의 비율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을 밝힌다.

Ⅲ. 연구결과

1. 맞춤형 보육에 대한 원장의 인식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에서는 맞춤형 보육의 취지,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 맞춤형 보육의 만족여부, 맞춤형 운영시간의 적절성, 맞춤형 보육료의 적절성, 맞춤형 보육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 맞춤형 보육에 유익한 대상과 불리한 대상, 맞춤형 보육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맞춤형 보육의 취지

맞춤형 보육의 취지에 대한 원장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맞춤형 보육의 취지에 대해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아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오랜 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응답이 15.1%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대부분이 맞춤형 보육의 취지를 각 가정의 상황에 따른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4〉 맞춤형 보육의 취지에 대한 인식

		N=152
구분		빈도(%)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아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 유도 •맞벌이, 학업 등으로 오랜 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 •전년 대비 맞춤형 기본보육료 인상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증가로 운영 안정화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시간 증가 •기타(정부의 보육예산 절감, 취지를 모르겠음 등)	109(71.7)	23(15.1)
	7(4.6)	1(0.7)
	12(7.9)	

나.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2%,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1.8%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5〉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 및 이유

		N=141
구분	빈도(%)	이유 빈도(케이스%)
필요하다	68(48.2)	•가정 양육 가능 영아의 가정 양육 강화를 위해 59(86.8)
		•종일반 영아의 충분한 보육서비스 보장을 위해 20(29.4)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16(23.5)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12(17.6)
		•기타 2(2.9)
		계 109(160.2)
필요하지 않다	73(51.8)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변화가 없으므로 59(80.8)
		•보육료 수입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33(45.2)
		•원장의 업무 과중으로 충분한 역할 수행이 불가하므로 29(39.7)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보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26(35.6)
		•기타(케이스별 반영의 어려움, 취지에 위배 등) 6(8.2)
		계 153(209.5)

주: 이유는 중복응답 문항임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원장 6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중복응답으로 물은 결과, 전체의 86.8%가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의 가정 양육 강화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전체의 29.4%가 종일반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73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중복응답으로 물은 결과, 전체의 80.8%가 맞춤형 보육 이전과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45.2%가 보육료 수입이 감소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원장의 업무 과중(39.7%)과 교사의 업무 과중(35.6%)도 1/3 이상의 원장들이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꼽았다.

다. 맞춤형 보육의 만족여부

맞춤형 보육의 만족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맞춤형 보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15.2%인데 반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4.8%로 5배 이상 높았다.

<표 6> 맞춤형 보육의 만족여부 및 이유

N=145

구분	빈도(%)	이유	빈도(케이스%)
만족한다	22(15.2)	•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의 가정 양육 강화	22(100.0)
		• 바우처로 맞춤형 부모 편의성 증대	9(40.9)
		• 맞춤형 하원 후 교사의 보육 질 제고를 위한 시간 증가	9(40.9)
		• 맞춤형, 종일반의 보육료 차이	5(22.7)
		• 운영시간의 감소	3(13.6)
		계	48(218.2)
불만족한다	123(84.8)	•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획일성	89(72.4)
		•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유입력으로 인한 원장 업무 과중	71(57.7)
		• 영아마다 다른 바우처 사용일로 인한 교사 업무 과중	68(55.3)
		• 맞춤형, 종일반으로 이원화된 영아 관리	58(47.2)
		• 각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획일성	47(38.2)
		• 자격 획득을 위한 실제와 다른 서류 제출	44(35.8)
		• 맞춤형 영아 비율이 많아 보육료 수입 감소	41(33.3)
		• 기타(맞춤형 하원 후 종일반 영아의 정서적 불안감 발생 등)	5(4.1)
		계	423(343.9)

주: 이유는 중복응답 문항임

맞춤형 보육에 만족한다고 선택한 22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중복응답으로 물은 결과, 모두(100%)가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의 가정 양육 강화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전체의 40.9%가 필요 시 바우처 사용으로 맞춤형 부모 편의성 증대, 맞춤형 영아들의 하원 후 교사의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시간 증가 때문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맞춤형 보육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선택한 123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중복응답으로 물은 결과, 전체의 72.4%가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확일성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유입력으로 인한 원장의 업무 과중(57.7%), 교사의 업무 과중(55.3%)이 뒤를 이었다.

라. 맞춤형 운영시간의 적절성

맞춤반 운영시간(6시간/일+바우처 15시간/월)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맞춤형 운영시간의 적절성 및 이유

N=143

구분	빈도(%)	이유	빈도(%)
적절하다	31(21.7)	• 영아의 발달에 적절함	13(41.9)
		• 하루 일과 운영에 적절함	12(38.7)
		• 바우처 사용기준이 적절함	3(9.7)
		• 바우처 사용시간이 적절함	3(9.7)
		계	31(100.0)
적절하지 않다	112(78.3)	• 낮잠, 간식 시간 등 일과와 겹침	46(47.4)
		• 바우처 사용기준이 모호함	27(27.8)
		• 바우처 사용시간이 부적절함	15(15.5)
		• 특별활동 시간과 겹침	3(3.1)
		• 기타(의미가 없음 등)	6(6.2)
		계	112(100.0)

원장들의 21.7%가 맞춤형 운영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78.3%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맞춤형 운영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영아의 발달에 적절하기 때문(41.9%)과 하루 일과 운영에 적절하기 때문(38.7%)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낮잠시간 및 간식시간 등 일과와 겹치기 때문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맞춤반 운영시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원장들을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맞춤형 운영시간을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원장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맞춤반 운영시간은 평균 하루에 5.81($SD=2.09$)시간이었으며, 바우처 시간은 한 달에 16.76($SD=7.43$)시간으로 나타났다. 즉, 맞춤반 운영시간은 현재보다 약간 적게, 바우처 시간은 현재보다 약간 많이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응답의 편차가 커서 평균적으로는 현재 규정된 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표 8〉 맞춤반 운영으로 적절한 시간

구분	평균(표준편차)	응답자수
맞춤반 운영시간(일)	5.81(2.09)	54
바우처 시간(월)	16.76(7.43)	42

마. 맞춤반 보육료의 적절성

맞춤반 보육료(종일반의 80%+바우처 최대 6만원/월)의 적절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맞춤반 보육료의 적절성

구분	빈도(%)	이유	빈도(%)
적절하다	21(14.4)	• 종일반과 맞춤반 운영비 차이에 비례함	12(57.1)
		• 종일반 영아가 많아 보육료 수입이 높아짐	6(28.6)
		• 바우처 금액이 적절함	3(14.3)
		계	21(100.0)
적절하지 않다	125(85.6)	• 종일반과 맞춤반 운영비 지출에 차이가 없음	38(32.8)
		• 맞춤반 영아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을 고려하지 않음	27(23.3)
		• 종일반 보육료 자체가 적절하지 않음	25(21.6)
		• 바우처 사용 후 추가 보육 시 부모 부담이 발생함	21(18.1)
		• 기타(어린이집 업무과중, 부모 부담 증가 등)	5(4.3)
		계	125(100.0)

N=146

원장들의 14.4%가 맞춤반 보육료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85.6%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맞춤반 보육료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21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종일반과 맞춤반의 운영비 차이에 비례하기 때문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12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종일반과 맞춤반의 운영비 지출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바. 맞춤형 보육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 운영에서 변화된 점을 묻고, 변화된 정도와 바람직한 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어린이집 운영상 변화 여부와 변화 및 바람직한 정도

N=152

내용	변화 여부 빈도(케이스%)	변화된 정도 평균(표준편차)	바람직한 정도 평균(표준편차)
• 보육료 수입	141(92.8)	2.99(1.23)	2.11(1.06)
• 원장의 근무여건	138(90.8)	3.32(1.27)	2.00(1.03)
•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130(85.5)	3.00(1.31)	2.02(1.01)
• 가정 양육이 가능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133(87.5)	2.45(1.21)	2.37(1.16)
•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126(82.9)	2.20(1.20)	2.21(1.08)
• 부모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126(82.9)	2.47(1.28)	2.19(1.04)
• 어린이집 전체 운영시간	122(80.3)	1.93(1.10)	2.07(0.99)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 여부에 대해 중복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92.8%가 보육료 수입에서 변화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변화를 느꼈다고 응답하여 원장들이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변화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 운영에서 변화된 점에 대해 그 변화 정도를 5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에서는 원장의 근무여건이 3.32($SD=1.27$),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3.00($SD=1.31$), 보육료 수입이 2.99($SD=1.2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93($SD=1.10$)로 가장 낮았다. 즉,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원장의 근무여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보육료 수입은 변화 정도가 보통 혹은 보통 이상이라고 느끼는 반면, 어린이집 전체 운영시간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그러한 변화가 바람직한지를 5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에서는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맞춤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M=2.37$, $SD=1.16$), 오랜 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아(종일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M=2.21$, $SD=1.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2.00-2.37의 분포를 보여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 맞춤형 보육에 유익한 대상과 불리한 대상

맞춤형 보육에 가장 유익한 대상과 가장 불리한 대상을 알아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맞춤형 보육에 유익한 대상과 불리한 대상

단위: 빈도(%)

구분	유익한 대상(N=142)	불리한 대상(N=152)
• 맞춤형 영아	49(32.2)	10(6.6)
• 종일반 영아	7(4.6)	8(5.3)
• 교사	7(4.6)	11(7.2)
• 원장	0(0.0)	59(38.3)
• 부모	8(5.3)	13(8.6)
• 모두	1(0.7)	24(15.8)
• 없음	63(41.4)	8(5.3)
• 기타(정부 등)	7(4.6)	2(1.3)

원장들이 인식한 맞춤형 보육에 유익한 대상은 없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맞춤형 영아가 32.2%로 뒤를 이었다. 그 이유를 자유기술한 내용을 보면, 없음을 선택한 경우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특별한 이익이 없기 때문, 맞춤형 영아를 선택한 경우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 애착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유익한 대상이 정부라는 응답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보육 예산의 절감 때문이라고 기술하였다.

맞춤형 보육에 유익한 대상에 대해 원장을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것과 달리, 불리한 대상은 원장이라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았으며, 모두라는 응답이 15.8%로 뒤를 이었다. 불리한 대상이 원장인 이유를 자유기술한 내용을 보면, 종일반과 맞춤형으로 분리된 영아 관리의 어려움, 보육통합시스템에 바우처 사용시간 입력 등의 업무 증가, 보육료 수입 감소 등이 있었다.

아. 맞춤형 보육으로 인한 어려움

원장으로서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을 1,2,3 순위로 알아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원장으로서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1순위로는 재정적 부담(보육료 수입 감소)이 26.3%로 가장 높았고, 매 월 변동되는 맞춤형, 종일반 자격 영아 확인(16.4%), 각 영아의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용사유 입력(15.1%) 순이었다. 2순위로는 각 영아의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용사유 입력이 25.0%로 가장 높았고, 학기 중 변경된 정책으로 인한 업무 혼동과 어려움 없음이 각기 15.1%로 동일하게 뒤를 이었다. 3순위로는 관계서류 준비가 13.2%로 가장 높았고, 각 영아의 바우처 사용시간 확인, 사용시간 및 사용사유 입력이 각기 12.5%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부모의 이해 부족과 교사의 이해 부족은 모든 순위에서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표 12〉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

단위: 빈도(%)

구분	1순위 (N=152)	2순위 (N=149)	3순위 (N=149)
• 매 월 변동되는 맞춤형, 종일반 자격 영아 확인	25(16.4)	13(8.6)	18(11.8)
• 부모의 이해 부족	1(0.7)	9(5.9)	9(5.9)
• 교사의 이해 부족	2(1.3)	1(0.7)	1(0.7)
• 맞춤형 보육 실행 초기 매뉴얼 미비	16(10.5)	7(4.6)	11(7.2)
• 각 영아의 바우처 사용시간 확인	11(7.2)	10(6.6)	19(12.5)
• 각 영아의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유입력	23(15.1)	38(25.0)	19(12.5)
• 부모에게 바우처 사용 시 사유 받는 것	6(3.9)	14(9.2)	10(6.6)
• 맞춤형 보육 운영시간 계획	2(1.3)	10(6.6)	4(2.6)
• 맞춤형 영아의 하원 지도	3(2.0)	7(4.6)	12(7.9)
• 관계 서류 준비	4(2.6)	8(5.3)	20(13.2)
• 재정적 부담(보육료 수입 감소)	40(26.3)	9(5.9)	8(5.3)
• 학기 중 변경된 정책으로 인한 업무 혼동	17(11.2)	23(15.1)	17(11.2)
• 어려움 없음	1(0.7)	23(15.1)	1(0.7)

2. 맞춤형 보육에 대한 원장의 요구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맞춤형 보육의 개선점,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맞춤반, 종일반)을 위한 방안, 향후 보육정책의 지향점, 새로운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고려할 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맞춤형 보육의 개선점

맞춤형 보육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맞춤형 보육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

N=144

내용	빈도(%)
• 맞춤형 보육료	38(26.4)
• 종일반과 맞춤형의 자격인정 방법	29(20.1)
• 맞춤형 운영시간	27(18.8)
•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유입력 방법	26(18.1)
• 바우처 사용방법	9(6.3)
• 바우처 사용 영아의 보육환경(인력 및 공간)	9(6.3)
• 기타(맞춤형 보육에 대한 부모의 이해, 바우처 사용시간 입력기한 확대 등)	6(4.2)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맞춤형 보육료(26.4%)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종일반과 맞춤반의 자격인정 방법(20.1%), 맞춤반 운영시간(18.8%),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유입력 방법(18.1%)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에서 전반적인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을 맞춤반과 종일반으로 나누어 알아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먼저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한 영아의 애착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고 있음에 기초하여 원장들이 생각하는 맞춤반 영아를 위한 바람직한 보육의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과반에 가까운 46.3%가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종일반 이용 시 종일반 추가 보육료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맞춤반 영아를 위한 바람직한 보육의 방안에 대해 맞춤형 보육의 정착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4%에 그쳐 원장들이 맞춤형 보육의 취지와 실효성 간에 차이를 느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표 14>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

내용	단위: 명(%)	
	맞춤반 (N=136)	종일반 (N=139)
•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	63(46.3)	64(46.0)
• 영아의 부모에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보육환경 보장	26(19.1)	24(17.3)
•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17(12.5)	21(15.1)
• 영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13(9.6)	6(4.3)
• 종일반 운영에 적합한 국가 지원금 제공	9(6.6)	21(15.1)
• 맞춤형 보육의 정착	6(4.4)	1(0.7)
• 외벌이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2(1.3)	2(1.4)

종일반 영아를 위한 바람직한 보육의 방안에서도 원장의 46%가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종일반 이용 시 종일반 추가 보육료 납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영아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보육환경 보장(17.3%),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15.1%), 종일반 운영에 적합한 국가 지원금 제공(15.1%)이 뒤를 이었다. 반면, 맞춤형 보육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0.7%로 가장 낮았다. 즉, 원장들은 영아의 바람직한 종일반 이용을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하고, 종일반 이용 시 추가 보육료를 부과하여

종일반이 꼭 필요한 영아들만 종일반을 이용하도록 하고, 국가적으로 종일반이 필요한 영아를 줄이며, 추가 지원을 통해 종일반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 향후 보육정책의 지향점 및 새로운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고려할 점

앞으로 보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점 및 새로운 보육정책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알아본 결과는 <표 15>와 같다. 원장들에게 앞으로 보육정책이 가장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국가, 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책임지는 보육이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종일반 이용 영아의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24.5%), 교사가 행복한 보육 환경 지원(23.7%)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즉, 원장들은 보육정책이 어린이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국가, 부모, 어린이집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맞춤형 뿐 아니라 종일반 이용 영아의 보육의 질과 교사들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5> 향후 보육정책의 지향점 및 새로운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고려할 점
단위: 빈도(%)

향후 보육정책의 지향점 (N=139)		새로운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고려할 점 (N=142)	
• 국가, 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책임지는 보육	53(38.1)	•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와 조정	39(27.5)
• 종일반 이용 영아의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34(24.5)	• 충분한 기간의 시범사업	33(23.2)
• 교사가 행복한 보육 환경 지원	33(23.7)	• 정책 결정자의 전문성	26(18.3)
• 각 가정의 다양성을 인정한 보육지원	15(10.8)	• 시범사업의 공개와 논의	17(12.0)
•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0(0.0)	• 사전에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충분한 안내 제공	14(9.9)
• 기타(부모가 가정에서 영아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4(2.9)	• 정확한 수요조사	10(7.0)
		• 기타(실무자들의 의견 반영)	3(2.1)

새로운 보육정책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와 조정이라는 응답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충분한 기간의 시범사업(23.2%), 정책 결정자의 전문성(18.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원장들은 새로운 보육정책을 마련할 때 실제 운영자로서 정책 결정 과정을 공유 받고

의견을 나누어 조정하며, 충분한 기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보육정책이 제시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맞춤형 보육은 시행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선행연구와의 비교·논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맞춤형 보육의 취지, 필요성, 만족도, 어려움 등에 대한 원장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째, 70% 이상의 원장들이 맞춤형 보육의 취지가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아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국가에서 제시하는 맞춤형 보육의 가장 중요한 취지(보건복지부, 2016a)와 일치하는 것으로 새롭게 시행된 정책에 대해 비교적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시간 증가라고 응답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맞춤형 보육이 영아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보육의 질 제고에 대한 취지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영아를 보육하는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원장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원장들이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의 가정 양육 강화를 위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맞춤형 보육의 취지에 대한 인식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을 통해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영아들의 가정에서의 양육 시간을 늘림으로써 부모와의 바람직한 애착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원장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원장들이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맞춤형 보육 시행 이전과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맞춤형 보육이 필요한 이유와 대

조되는 결과로, 세 가지의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맞춤형 자격을 받은 영아들은 맞춤형 보육 시행 이전에도 일찍 하원하여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충분히 양육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실제로는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부모들이 서류상으로 종일반 자격을 받아 종일반 이용을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뉴스1(2016. 7. 16.) 등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는 것이다. 셋째는 맞춤형으로 자격을 받았더라도 바우처를 최대한 사용하거나 바우처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부모가 영아자녀의 어린이집 추가 이용을 부탁하여 원장이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한 경우가 가능하다. 즉, 이러한 가능성들을 통해 실제로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면, 어린이집에 맞춤형 자격을 받은 영아가 있어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변화되지 않고 보육료 수입의 차이만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맞춤형 보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원장들이 그 이유로 답한 내용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보육료 수입이 감소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상통하며, 맞춤형과 종일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맞춤형 보육료를 종일반 보육료의 80%로 책정한 것이 가정에서 양육 가능한 영아가 가정에서 충분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근거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6년 9월에 부산 학부모 연대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연합뉴스, 2016. 9. 29.)에서도 학부모의 80% 이상이 맞춤형 보육에 불만족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등·하원시간이 달라지지 않아서, 보육내용은 변하지 않고 불필요한 절차가 생겨서, 육아 및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원장 뿐 아니라 부모들도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영아들의 등·하원 시간에 차이가 없음을 지적한 것으로, 한편으로는 제도 자체가 불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영규(2016)의 분석대로 맞춤형 보육이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은 시행 초기이고,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분석이 계속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에 대해 약 80%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박사빈(2016)이 경북지역 민간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시행 초기인 8월에 조사하였을 때, 96.4%가 '불만족한다'고 답한 것에 비하면, 본 연구의 결과가 좀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시행 초기의 혼란이 점차 안정되어 가는 시점에, 민간만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여전히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보육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획일성, 원장과 교사의 업무 과중 때문이었는데, 이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종일반과 맞춤형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기 어렵고, 맞춤형과 종일반으로 이원화된 영아의 관리 부담으로 원장 및 교사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맞춤형 보육에 대한 토론내용(김진석 외, 2016)과도 맥을 같이한다.

넷째, 맞춤형 운영시간에 대해 원장들 중 1/5 정도는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나머지 4/5 정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박사빈(2016)의 연구에서 맞춤형 보육의 보육시간에 대한 불만족이 94.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완화된 결과이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낮잠시간 및 간식시간 등 일과와 겹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과반에 가까웠다. 맞춤형의 적절한 운영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를 평균으로 살펴보면, 맞춤형 운영시간은 5.81시간(일), 바우처 시간은 16.76시간(월)이었다. 결과만으로 볼 때, 이는 현재의 맞춤형 운영시간(6시간/일) 및 바우처 시간(15시간/월)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맞춤형 운영시간이 일과와 겹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을 고려할 때 맞춤형 운영시간을 낮잠시간 이전(오후 1시 이전) 또는 낮잠시간 및 간식시간 이후(오후 4시 이후)로 희망하여 결국 평균 시간은 현재와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보육정책 개편방안 연구(서문희 외, 2009)에서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제도적으로 오후 2시 30분 전후에 귀가하는 유형과 오후 7시 30분 정도까지 이용하는 유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영아에 한하여 12시경에 귀가하는 3시간 단시간형 보육도 가능하도록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맞춤형 보육의 대상이 0-2세 영아인 만큼 적절한 운영시간을 고려할 때는 영아들의 발달 상태와 생리적 필요가 반드시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겠다(Wittmer & Petersen, 2006/2011).

다섯째,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료에 대해 약 85%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박사빈(2016)의 민간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육료에 대한 불만족이 92.7%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완화된 결과이기는 하다. 맞춤형 보육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종일반과 맞춤형 운영비 지출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영아반 보육료는 연령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나 바우처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60천원(월/최대)으로 책정되어 있어 0세 맞춤형 영아가 바우처를 사용할 때 가장 비용적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 것도 맞춤형 보육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6d)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는 상황에 맞게 일과를 수립하여 맞춤형 영아에게

급식 1회, 간식 2회(오전, 오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맞춤형 보육 시행을 이유로 교사를 시간제로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보육교사 복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맞춤형의 운영비 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급·간식비 및 교사 인건비에 있어서 종일반의 운영비 지출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맞춤형 보육료가 종일반의 80%로 책정된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아 정부와 어린이집의 갈등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 맞춤형 영아가 바우처를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이 추가될 수는 있으나 바우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보건복지부, 2016b), 맞춤형 보육료 산정에 대해서는 실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는 대로 재조정 혹은 근거에 기초한 홍보가 필요하겠다. 맞춤형 보육을 비용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어린이집의 다툼(뉴시스, 2016. 10. 9.)이나 보육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이 아닌 예산 맞춤형 보육(김진석 외, 2016)으로 보는 시선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명확히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상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 결과에서는 원장들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에 직결되는 보육료 수입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 운영에서 변화된 점에 대해 변화된 정도와 바람직한 정도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원장의 근무여건과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가장 많이 변화하였다고 인식하였으나, 반대로 바람직한 정도는 그 두 가지가 가장 낮았다. 가장 많은 원장들이 맞춤형 보육 이후 변화된 점이라고 인식하는 보육료 수입에 있어서도 변화된 정도는 보통 수준이나 변화의 바람직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보육에서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보육료 수입, 원장 및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느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맞춤형 보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육료 수입, 원장 및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종합해보면,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다양한 변화는 느끼되, 변화의 정도가 원장의 근무여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통 혹은 그 이하라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의 시행에 따라 변화는 있으나 그 변화가 크지는 않아서 크게 여파를 받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서울, 경기 지역 원장들은 앞서 ‘연구대상’에서도 밝혔듯이 맞춤형 영아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바람직한 정도는 보통보다 한참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보다 심도있는 의견 수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곱째, 맞춤형 보육에 유익한 대상에 대해서는 ‘없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맞춤형 보육 시행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나 홍보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맞춤형 보육이 유익한 대상은 맞춤형 영아였는데, 그 이유는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 애착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정양육 시간의 증가가 맞춤형 영아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영아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만큼 가정에서의 양육 지원(한영규, 2016)이나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교육 등이 제공될 필요도 있겠다. 유익한 대상이 원장이라는 응답은 아무도 없었는데 반해, 불리한 대상이 원장이라는 응답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종일반과 맞춤형으로 분리된 영아 관리의 어려움, 보육통합시스템에 매일 바우처 사용시간 입력 등의 업무 증가, 보육료 수입 감소 때문이었다. 즉,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장의 업무가 폭증하여 원장의 근무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맞춤형 보육의 바람직한 정착과 유지를 위해 어린이집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의 측면에서도 맞춤형 보육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여덟째, 원장으로서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 재정적 부담(보육료 수입 감소), 각 영아의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용사유 입력, 관계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맞춤형이 많은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원장의 업무 강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반면, 교사나 부모의 이해 부족, 맞춤형 보육 운영시간 계획, 맞춤형 영아의 하원 지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 대상이 원장이어서 자신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려움이 보다 크게 인식되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교사와 부모 입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연구문제 2에서는 맞춤형 보육의 개선점,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 향후 보육정책의 지향점 및 고려점에 대한 원장의 요구를 알아보았다. 첫째, 맞춤형 보육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료, 종일반과 맞춤형의 자격인정 방법, 맞춤형 운영시간,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유입력 방법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위에서 맞춤형 보육료에 대해 대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결과와 연결되는 것으로, 실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들에게는 보육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종일반과 맞춤형의 자격인정 방법이 좀 더 실체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홍보·개선될 필요가 있고, 맞춤형 운영시간도 ‘맞춤형 보육 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16d)에 제시된 대로 낮잠, 간식 등의 일과와 겹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탄력조정이 필요하겠다. 네 번째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힌 바우처 사용시간 및 사유입력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미 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입력 기간이 본 연구가 실시된 2016년 9-10월에는 3일 이내였으나 12월부터는 7일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은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7일이 적절한 기간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원장들은 맞춤형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과 종일반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 모두에 대해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종일반 이용시 종일반 추가 보육료 납부), 영아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보육환경 보장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원장들이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현재 12시간 종일반 운영을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으로 두고 맞춤형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꼭 필요한 영아들에게만 12시간의 종일반 이용을 제공하는 방안이 영아의 바람직한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다면, 대부분 영아들은 8시간 내에 부모의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종일반 이용이 꼭 필요한 영아들은 추가 보육료를 납부하여 종일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좀 더 다각적인 차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도 개선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영아의 어머니와의 애착형성은 이후 발달과 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Stern, 2002) 영아의 바람직한 애착관계 형성은 그 중요성이 크지만, 맞춤형 영아를 위한 방안이 맞춤형 보육의 정착이라는 응답은 4.4%에 불과하였으며,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종일반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방안이 맞춤형 보육의 정착이라는 응답도 0.7%에 불과하였다. 이는 원장들이 맞춤형 보육이 맞춤형 영아, 종일반 영아 모두에게 바람직한 보육의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장들의 의견대로 맞춤형 보육의 정착이 영아의 바람직한 보육을 위한 중요 방안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맞춤형 보육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주요 주체인 원장들이 맞춤형 보육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면, 그 실행의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원장들은 보육정책이 지향해야 할 점으로 국가, 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책임

지는 보육, 종일반 이용 영아의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교사가 행복한 보육 환경 지원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맞춤형 보육의 시행으로 원장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보육정책이 어린이집만의 부담 및 책임이 아닌 국가, 부모와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교사가 행복한 보육 환경 지원이라는 응답도 23.7%의 비율을 보여 원장들이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나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장들은 새로운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고려할 점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와 조정, 충분한 기간의 시범사업, 정책 결정자의 전문성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명수(2014)의 연구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들이 보육 정책에 대한 바람으로 일관성, 참여가능, 정책과 어린이집간의 양방향 소통을 꼽은 결과와 유사하다. 즉, 원장들은 보육정책에 실제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정책 결정 과정을 공유 받고, 의견 제시를 통해 내용이 조율되며, 충분한 기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새로운 보육정책이 마련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보육이 그 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 이전과 이후에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변화가 없으며, 그 누구도 특별한 이익을 받지 못하고 있어 맞춤형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맞춤형 보육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원장들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면, 맞춤형 보육이 그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심도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전반적인 보육이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둘째, 영아들의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는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운영적으로 안정화 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맞춤형 보육이 다양한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과 체계화 되지 않은 업무 매뉴얼로 보육료 수입, 원장과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맞춤형 영아가 많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중화된 영아의 하원 지도를 포함한 일과 운영 방안, 바우처 입력 방법 등에 대한 업무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보육정책은 국가, 부모, 어린이집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원장들은 맞춤형 보육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향후 보육정책의 지향점과 새로운 보육정책 마련을 위해 고려할 점에서 국가, 부모, 어린이집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보육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어린이집과 부모, 영유아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보육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부모와 어린이집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을 서울과 경기로 한정하였고, 대표적인 어린이집 유형들(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 유사한 비중으로 표집하였으므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으나 실제로 그 비중이 적은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이 과포함되어 결과를 전체에 일반화하거나 특정 유형의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맞춤형 보육의 시행 상황을 좀 더 다각도로 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별이나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여파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 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됨으로써 제도가 충분히 안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각자의 입장에서의 인식 및 요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원장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입장에서의 인식 및 요구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맞춤형 보육을 개선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사례연구나 인터뷰를 사용한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의견과 생각을 파악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미·이승연(2016). 만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전업주부들의 경험과 생각에 대한 질적 탐색. 육아지원연구, 11(4), 137-172.
- 김경수·김상희·남인순·박주민·백혜련·변재일·조웅천(2016).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정책위원회, 맞춤형 보육 토론회 토론집, 1-72.

- 김진석·김은정·안정인·최경숙·김호연·이경민(2016). 맞춤형 보육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곡성. 월간 복지동향, 214, 53-58.
- 김현숙·이수진(2012). 보육산업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응용경제, 14(2), 5-30.
- 김현진·윤상용(2015). 맞춤형 보육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24시간 보육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90, 131-157.
- 뉴스1(2016. 7. 16.). 정부 맞춤형 보육사업, 학부모들 '편법 취업' 부추겨. <http://news1.kr/articles/?2721656>에서 2016년 9월 18일 검색.
- 뉴스24(2016. 10. 9). [맞춤형 보육 100일] 학부모는 불만 쌓이고...어린이집은 운영난 걱정.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08_0014436866&CID=10201&pID=10200에서 2016년 10월 20일 검색.
- 박사빈(2016).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조사와 개선방안 제안: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01, 95-115.
- 보건복지부(2013a). 13년 3월 영유아 보육양육 지원 현황(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3b).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16a). 2016년 맞춤형 보육 안내.
- 보건복지부(2016b).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보도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16c). 맞춤형 보육 100일, 보육현장에서 정착 중(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6d). 맞춤형 보육 운영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2017).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사회보장정보원(2017. 2. 27.).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안내('17. 3월 시행).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에서 검색.
- 서문희·안재진·이세원·유희정(2009). 보육정책 개편방안 연구 -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연합뉴스(2016. 9. 29). 맞춤형 보육 시행 석달...학부모 불만 부글부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9/0200000000AKR2016092906790051.HTML?input=1195m>에서 2016년 10월 8일 검색.
- 유영욱(2008). 보육료 지원 정책과 기본 보조금 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 및 활용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주(2013). 보육지원정책에 관한 보육교직원들의 인식 분석 -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데일리(2016. 10. 5). 맞춤형 보육 3개월째 제자리 걸음...종일반 4시 하원 여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357926612809968&DCD=A00701&OutLnkChk=Y>에서 2016년 10월 20일 검색.

- 이미화·유해미·최효미·조아라(2014). 무상보육 이후 보육정책 방향 연구(2014 수탁보고). 육아정책연구소.
- 이보미(2010).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정책의 추진 현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명수(2014). 만0-2세 무상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인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정옥(2015).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정책의 현황 분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규(2016). 정책동향: 아이와 부모를 위한 맞춤형 보육. 육아정책포럼, 50, 28-34.
- Castles, F. G. (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 friendly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209-227.
- Sleeboos, J. (2003). Low fertility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s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5, 10-54.
- Stern, D. N. (2002). *The first relationship: Infant and moth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ittmer, D. S., & Petersen, S. H. (2011). 영아 발달과 반응적 교육: 관계중심 접근법(이승연·김은영·강재희·문혜련·이성희 공역). 서울: 학지사. (원서 2006 출판)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메일 dearsy@ewha.ac.kr

Abstract

Childcare Center Directors' Perceptions and Demands on Customized Childcare

Hyo-Mi Lim and Seung Yeo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and demands of childcare center directors on customized childcare policy that was implemented recently since July 1, 2016 in Korea. 152 directors at various types of childcare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 filled out surveys from September 26 to October 30, 2016.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directors' perceptions on customized childcare, although they fully understood the intent of the policy and about half of them acknowledged the necessity of the policy, most of them were dissatisfied with the policy. In addition, they thought that the operating hours and the childcare fees for the customized classes were not appropriate. Furthermore, they felt the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of directors and teachers and center income from childcare fees due to the policy's enforcement, and these changes led to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difficulties. Second, in terms of the directors' demands on customized childcare, they demanded overall improvement of the policy. In particular, they suggested to modify the basic operating hours from 12 hours to 8 hours in order to provide advisable childcare for infants. For the question on what the future childcare policies should pursue, the most common response was a shared responsibility among the government, parents, and childcare centers. For the question on w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making a new childcare policy, most of the respondents demanded the notification and mediation of policy-making processes. These results imply the needs for the continuous improvement and active publicity of the customized childcare policy.

Key words: customized childcare, customized class, all-day class, childcare centers, directors